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9조)

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안 제5조제2항)

▶ 증권거래법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09.2.4)

## 4. 검토의견

###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제2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9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용법령 및 조항, 기관 명칭 변경

- ▶ 「증권거래법」 제17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4조(안 제9조)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

금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령과 조항을 변경하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9조)을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